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<b>담당자</b>	이 수 암 사무관 (02-2100-2676)	
	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강 전(02-3145-7010)		김 진 국 부국장 (02-3145-7012)	

## 제 목 :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

-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는 2018.4.12.(목)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.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
  - 미래에셋대우(주), 삼성증권(주), 신한금융투자(주) 및 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
  -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

### 1. 과징금 부과 결정

-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1997.12.31. 법률 제5493호, 이하 “금융실명법”), 법제처의 2018.2.12.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.2.19.~3.9. 검사결과 등에 따라
  - 1993.8.12.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음

□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

-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.8.12.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견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되었음

〈증권사별 차명계좌(27개) 1993.8.12. 당시 자산금액 현황〉

(단위 : 억원)

회사명(계좌수)	신한(13개)	한투(7개)	미래(3개)	삼성(4개)	합계(27개)
보유자산금액	26.4	22.0	7.0	6.4	61.8

-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%를 과징금으로,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%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

〈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〉

(단위 : 억원)

회사명(계좌수)	신한(13개)	한투(7개)	미래(3개)	삼성(4개)	합계(27개)
과징금 부과금액	14.51	12.13	3.85	3.50	33.99

## 2. 실명전환 의무 통보

-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,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, 법제처의 2018.2.12.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견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
-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견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

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